

의안번호	2211821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5.8.28.
추계번호	25D406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확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7~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7조 5,652억원(연평균 1조 5,13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35	35	35	35	35	175	35
소음대책사업 계획 수립·시행	10,660	11,246	11,868	12,529	13,231	59,534	11,907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2,854	3,011	3,178	3,355	3,543	15,942	3,188
합계	13,549	14,292	15,081	15,920	16,810	75,652	15,130

주: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을 현행 ‘소음영향도’에 더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도시지역)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비도시지역)를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확대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4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소음영향도 조사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 예상 시 주민대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변경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2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교육 및 주거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그 밖에 공향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소음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함(제2항)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방음시설 설치사업,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3항)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4	안 제19조의3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등)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제1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임(제2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	—
2	안 제5조제4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3	안 제19조의2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
4	안 제19조의3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안 제5조제1항 개정)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5년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2] 소음영향도 기준 및 지급기준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95 이상 (웨클)	90이상 95미만 (웨클)	85이상 90미만 (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 (웨클)
사격장	대형화기	94이상 (dB(C))	90이상 94미만 (dB(C))	84이상 90미만 (dB(C))
	소형화기	82이상 (dB(A))	77이상 82미만 (dB(A))	69이상 77미만 (dB(A))
지급기준액 (1인)		월 60,000원	월 45,000원	월 30,000원

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상금은 실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실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른 1인당 지급기준액에서 감액하여 실지급하고 있음

[표 3] 보상금 감액 기준

실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실거주기간
• 사격이 없는 경우: 미지급 • 1일 이상 8일 미만: 3분의 1 지급 • 8일 이상 15일 미만: 3분의 2 지급 • 15일 이상: 전액 지급	• 1989년 이전: 감액 없음 • 1989년~2010년: 30% 감액 • 2011년 이후: 50% 감액	• 부대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 30% 감액 • 부대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100% 감액	현역병 복무,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교도소 등 수용 기간 등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자료: 국방부

- 추계기간의 보상금 지급단가는 최근 3년간 소음대책지역의 1인당 월평균 보상금 실지급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단위: 원)

구분	보상금 기준금액	1인당 보상금 실지급액			
		2022	2023	2024	평균
제1종	월 6만원	41,560	40,190	39,610	40,453
제2종	월 4만5천원	31,060	30,780	30,230	30,690
제3종	월 3만원	20,160	19,690	20,280	20,043
평균		23,285	22,752	23,128	23,056

자료: 국방부

- 현행법에 따른 추계기간의 소음대책구역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지급인원

(단위: 명)

		2022	2023	2024	평균
현행	제1종	16,544	17,848	18,143	17,512
	제2종	88,217	85,781	88,490	87,496
	제3종	316,158	326,541	325,674	322,791
	합계	420,923	430,170	432,307	427,79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변경에 따른 인구 변화율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2023.1월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지역은 2018.5월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과 비교하여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경계설정 기준이 본 개정안과 유사하게 변경되었음¹⁾
-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 상의 기준변경 전·후 인구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의 경계지역 기준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인구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공항소음 방지법」 상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변경 전후 인구 비교

(단위: 명, %)

공항	변경 전 (18.5월 고시)	현재 (23.1월 고시)	증감(%)
김포	184,987	182,983	-1.1
김해	3,641	3,891	6.9
제주	22,805	31,207	36.8
울산	372	4	-98.9
여수	8	7	-12.5
합계	211,813	218,092	3.0

주: 2023년 1월 고시에서는 소음영향도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변경되었는데, 웨클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 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하여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LdendB(A)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하여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 +5dB, 야간 +10dB)하여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 것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시행(안 제19조의2 신설)

□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 물량) 개정안의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물량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

1)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2023.1월 소음대책지역 고시는 이전과 비교하여 소음영향도 단위를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변경, 소음 실측값의 변화, 향후 항공수요 예측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동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항공기소음 단위를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하고 있다는 점, 다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내용을 활용하여 추계함

- 2007년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²⁾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 활용³⁾
 - 단,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2,162개소 중 냉방시설 미설치 학교가 152개소로 미설치율이 1.2%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부가 매년 냉난방기 예산을 교부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사업으로 인한 학교의 냉방시설 설치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제5조제1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이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방음시설 설치사업,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및 그 지역 시설물 소유자 중 방음시설 설치사업,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소음대책사업 단가) 개정안에 따른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의 단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2025년 예산 단가를 활용
- 학교방음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집행시기가 2010년으

2)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2013.7)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601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0대 국회에서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6133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1대 국회에서 김정호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32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도 동 연구보고서의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를 적용하였음.

3) 국방부의 최근 소음대책지역 시설현황 자료가 없으며, 소음대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용비행장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장소 변화가 크지 않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에 따라 장소 변화가 있으나 전체 소음대책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장소 변화가 추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2024년 기준 교육부의 냉난방기 설치 교부예산은 전국 기준 108억 216억원임

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2025년 단가를 산정

- 국토교통부는 기타시설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사업 단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학교 단가의 1/10로 가정

[표 7] 소음대책사업 단가(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방음시설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전기요금 지원		
주택	학교	기타	주택	학교	기타		주택	학교	기타 (노유자)
30	912	91	3.6	1,950	195	0.03	0.2	15	1.2

주: 학교 방음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집행시기가 2010년으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2025년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기타시설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의 학교 단가의 1/10을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 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2027년 이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⁵⁾하였으며, 공영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 단가는 2025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안 제19조의3 신설)

-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상 다른 소음대책사업 예산 대비 주민지원사업 예산 비율 26.8%⁶⁾를 적용하여 산정

라. 기타

- 개정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7)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2.0%	2.0%	2.0%	2.0%	2.0%

6) 국토교통부, “제3차(2021~2025)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625억원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한 소음대책사업비 2,334억원 대비 26.8%에 해당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안 제5조제1항 개정)

□ (지원단가) 보상금 지급단가는 2022~2024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

[표 8] 보상금 월 지급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현행	제1종	40,453	40,453	40,453	40,453	40,453
	제2종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제3종	20,043	20,043	20,043	20,043	20,0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인원) 개정안에 따라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지역 기준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인구수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총 지급인원은 매년 44만 480명인 것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보상금 지급인원: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현행	제1종	17,512	17,512	17,512	17,512	17,512
	제2종	87,496	87,496	87,496	87,496	87,496
	제3종	322,791	322,791	322,791	322,791	322,791
	합계	427,799	427,799	427,799	427,799	427,799
개정안	제1종	18,031	18,031	18,031	18,031	18,031
	제2종	90,090	90,090	90,090	90,090	90,090
	제3종	332,360	332,360	332,360	332,360	332,360
	합계	440,480	440,480	440,480	440,480	440,4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을 주거용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도시지역)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비도시지역)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2027~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175억원

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현행	제1종	85.01	85.01	85.01	85.01	85.01	425.04
	제2종	322.23	322.23	322.23	322.23	322.23	1,611.15
	제3종	776.38	776.38	776.38	776.38	776.38	3,881.88
	합계(A)	1,183.62	1,183.62	1,183.62	1,183.62	1,183.62	5,918.08
개정안	제1종	87.53	87.53	87.53	87.53	87.53	437.64
	제2종	331.78	331.78	331.78	331.78	331.78	1,658.91
	제3종	799.39	799.39	799.39	799.39	799.39	3,996.96
	합계(B)	1,218.70	1,218.70	1,218.70	1,218.70	1,218.70	6,093.52
추가재정소요(B-A)		35	35	35	35	35	1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소음대책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9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에 소재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 현황) 소음대책구역의 시설을 개인주택과 공공시설(학교와 기타시설)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주택의 경우, 각 호당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공향소음 방지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가옥수 대비 세대수 비율⁷⁾을 활용하여 세대수로 환산

7)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5개 공향 근처 소음대책지역 내 가옥수는 82,320호이며, 세대수는 93,771세대로 호당 세대수는 1.14배임

[표 11] 소음대책 지원 시설 물량 현황

(단위: 세대, 개소)

구 분	개인시설(주택 등)		공공시설		
	가옥수	세대수	학교	기타	소계
합 계	254,799	290,242	121	626	747

주: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 상의 가옥수 대비 세대수 비율을 활용하여 환산
자료: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2007.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별 현황)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공영방송수신료지원 및 전기요금 지원은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별 현황: 2027~2031년

(단위: 호, 개소, 세대)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방음시설	주택	25,480	25,480	25,480	25,480	25,480
	학교	12.1	12.1	12.1	12.1	12.1
	기타	62.6	62.6	62.6	62.6	62.6
냉방시설	주택	25,480	25,480	25,480	25,480	25,480
	학교	0	0	0	0	0
	기타	62.6	62.6	62.6	62.6	62.6
공영방송수신료지원사업		290,242	290,242	290,242	290,242	290,242
전기요금 지원	주택	290,242	290,242	290,242	290,242	290,242
	학교	121	121	121	121	121
	기타	626	626	626	626	626

주: 학교의 냉난방기 설치비용 및 교육부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 교부 등을 고려할 때, 소음대책사업을 통한 학교 냉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음대책사업 단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단가는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사업 2025년 예산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공영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금은 2025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음

[표 13] 소음대책 지원사업 단가: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방음시설	주택	34	36	39	41	44
	학교	1,032	1,098	1,167	1,242	1,320
	기타	103	110	117	124	132
냉방시설	주택	3.7	3.8	3.9	4.0	4.1
	학교	2,029	2,069	2,111	2,153	2,196
	기타	203	207	211	215	220
공영방송수신료지원사업		0.03	0.03	0.03	0.03	0.03
전기요금 지원	주택	0.2	0.2	0.2	0.2	0.2
	학교	15	15	15	15	15
	기타	1.2	1.2	1.2	1.2	1.2

주: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단가는 2025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공영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금은 2025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 및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을 수행할 경우, 2027~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5조 9,534억원으로 추계됨

[표 14]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방음시설	주택	8,695	9,248	9,835	10,460	11,125	49,364
	학교	125	133	141	150	160	709
	기타	65	69	73	78	83	367
냉방시설	주택	954	973	993	1,013	1,033	4,774
	학교	0	0	0	0	0	0
	기타	127	130	132	135	137	661
공영방송수신료지원사업		87	87	87	87	87	435
전기요금 지원	주택	580	580	580	580	580	2,902
	학교	18	18	18	18	18	92
	기타	8	8	8	8	8	38
합계		10,660	11,246	11,868	12,529	13,231	59,534

주: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9조의3 신설)

-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상 소음대책사업 예산 대비 주민지원사업 예산 비율 26.8%를 적용하여 산정

[표 15] 주민지원사업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

	2027	2028	2029	2030	2031
소음대책사업	10,660	11,246	11,868	12,529	13,231
주민지원사업	2,854	3,011	3,178	3,355	3,543
비율	26.8	26.8	26.8	26.8	2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확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7~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7조 5,652억원(연평균 1조 5,130억원)으로 추계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35	35	35	35	35	175	35
소음대책사업 계획 수립·시행	10,660	11,246	11,868	12,529	13,231	59,534	11,907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2,854	3,011	3,178	3,355	3,543	15,942	3,188
합계	13,549	14,292	15,081	15,920	16,810	75,652	15,130

주: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자료의 한계로 국방부의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인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⁸⁾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를 활용⁹⁾하였으나,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현황이 달라질 경우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소음대책사업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설치사업과 냉방시설설치사업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또한, 교육부의 학교 냉방시설 설치 및 예산교부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냉방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배제하였으나, 학교 및 기타시설의 냉방시설, 방음시설 기설치현황, 주택의 냉방시설 기설치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사업 지원단가를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사업 2025년 예산 지원단가를 준용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상 다른 소음대책사업 대비 주민지원사업 비율 26.8%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상이할 수 있음

8)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2013.7)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601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0대 국회에서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6133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21대 국회에서 김정호의원이 제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320호)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도 동 연구보고서의 가옥, 시설 등 소음지도를 적용하였음.

9) 국방부의 최근 소음대책지역 시설현황 자료가 없으며, 소음대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용비행장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장소 변화가 크지 않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에 따라 장소 변화가 있으나 전체 소음대책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장소 변화가 추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